

운영규정 개정이력 보고서

번호	개정일자 (의결일)	구분	주요 개정내용
1	2025.05.12	변경	운영규정 제5장 제15조 제5항을 개정의결 (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고시 변경으로 인한 개정) 1등급 2,069,900 -> 2,306,400 2등급 1,869,600 -> 2,083,400 3등급 1,455,800 -> 1,485,700 4등급 1,341,800 -> 1,370,600 5등급 1,151,600 -> 1,177,000 인지지원등급 643,700 -> 657,400
2	2025.05.12	변경	운영규정 제5장 제15조 제6항을 개정의결 (방문간호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의 고시 변경으로 인한 개정) 15분 이상 ~ 30분 미만 40,760 -> 41,710 30분 이상 ~ 60분 미만 51,110 -> 52,310 60분 이상 61,490 -> 62,930
3	2025.05.12	변경	운영규정 제22장 제77조 제3항을 개정의결 (시설장의 담당 업무가 많으며, 물품 1개 사용으로 전체 비품관리 대장을 다 쓰 는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인한 과반수에 의한 개정) 2호 내용 : 주 1회를 기준으로 하며, 물품사용 즉시 비품관리 대장을 작성한다. -> 월 2회를 기준으로 하며, 물품사용 즉시 물품사용 대장을 작성한다.
4	2025.05.12	변경	운영규정 제22장 제77조 제6항을 개정의결 (의료폐기물이 극히 드물게 발생되어 2주 1회 버릴 폐기물이 없고 비닐을 불필 요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어 개정) 뿔개를 닫아 관리하는 것으로 감염 및 유출을 예방하고, 의료폐기물 통이 가득 차면 폐기물 전문 업체로 방문하여 처리한다.

5	2025.05.12	변경	운영규정 제23장 제81조 제2항을 개정의결 (법정의무교육 종류 중 자살예방교육 추가되어 개정) 2025년 법정의무교육 '자살예방교육' 추가함.
6	2025.05.12	변경	운영규정 제17장 제60조 제4항을 개정의결 (회의 시 마다 포상 인원을 선정하기에 중복 포상 및 포상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우려가 있음.) 포상시기 : 수시(정기 직원회의 또는 직원 교육 시) -> 시설장 재량으로 변경